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5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의자 : 황정아 · 박용갑 · 김현

박해철 · 이병진 · 황명선

오세희 · 문금주 · 김윤

이재관 · 양부남 · 한민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년”을 “2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